

2024년 도 문화재 위원회

제2차 공개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자료

- 일 시 : 2024. 3. 26.(화) 14:00~18:15
- 장 소 : 정부대전청사 1동 906호(대회의실)
- 출석위원 : 김기수(위원장), 강동진, 김종현,
김태일, 목수현, 송석기, 이광표,
이상희, 이혜은, (이상 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 고지사항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 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근대문화재분과 제2차 회의 안건 목록

【심의사항】

1	사적 「서울 대한의원」 등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공 개)
---	--	-------

【검토사항】

2	「구 부산측후소」 사적 지정 검토(재검토)	(공 개)
---	-------------------------	-------

3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	---------------------------------	-------

4	「곡성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	----------------------	-------

5	「민영환 명함(충정공 유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	--------------------------------	-------

6	「민영익 명함」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공 개)
---	------------------------	-------

7	국가등록문화재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 보수정비 설계(안) 검토	(공 개)
---	---	-------

【보고사항】

8	2024년 근대 사적 및 국가등록문화재 국고보조사업 추진	(공 개)
---	---------------------------------	-------

9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보고	(공 개)
---	------------------------	-------

심 의 사 항

1. 사적 「서울 대한의원」 등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가. 제안사항

사적 「서울 대한의원」 등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5항에 따라 수립된 사적 「서울 대한의원」 등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각 문화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서울 대한의원」 등 12개소

연번	명칭	도면변화 여부
1	서울 고종 어극 40년 청경기념비	X
2	서울 대한의원	O
3	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	X
4	서울 중앙고등학교 서관	X
5	서울 중앙고등학교 동관	X
6	한구단	O
7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O
8	서울 한국은행 본관	O
9	서울 정동교회	O
10	대구 계산동성당	O
11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O
12	구 도립대구병원	O

(3) 조정 취지

- ① 2016년 문화재청에서 시행한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내용 중 현재까지 미반영 된 ‘원지형보존’ 문구를 삭제*

* 기존) 신축금지, 심의구역, 원지형보존 등 → 변경) “개별심의”

- ② 2022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 시행(보존정책과)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견조회 거쳐 그 내용을 반영

(4) 세부내용

- ‘개별검토(원지형보존)’에서 ‘개별검토’로 변경
- 향후 GIS 등재 시 구역 범주화: 1구역(개별검토), 2구역(고도제한), 3구역(타법처리)

라. 문화재별 조정(안)

(1) 서울 고종 어극 40년 청경기념비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원지형 보존)	
제3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 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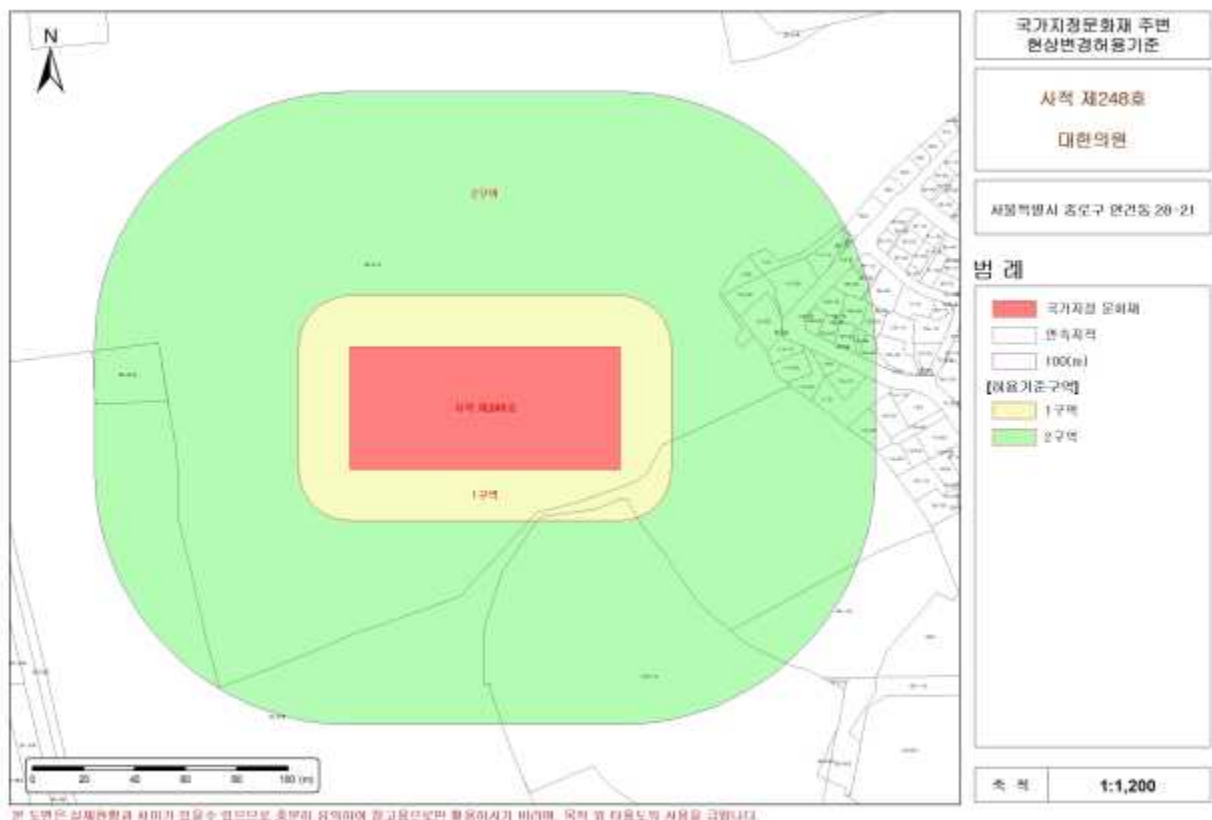
○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3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 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2) 서울 대한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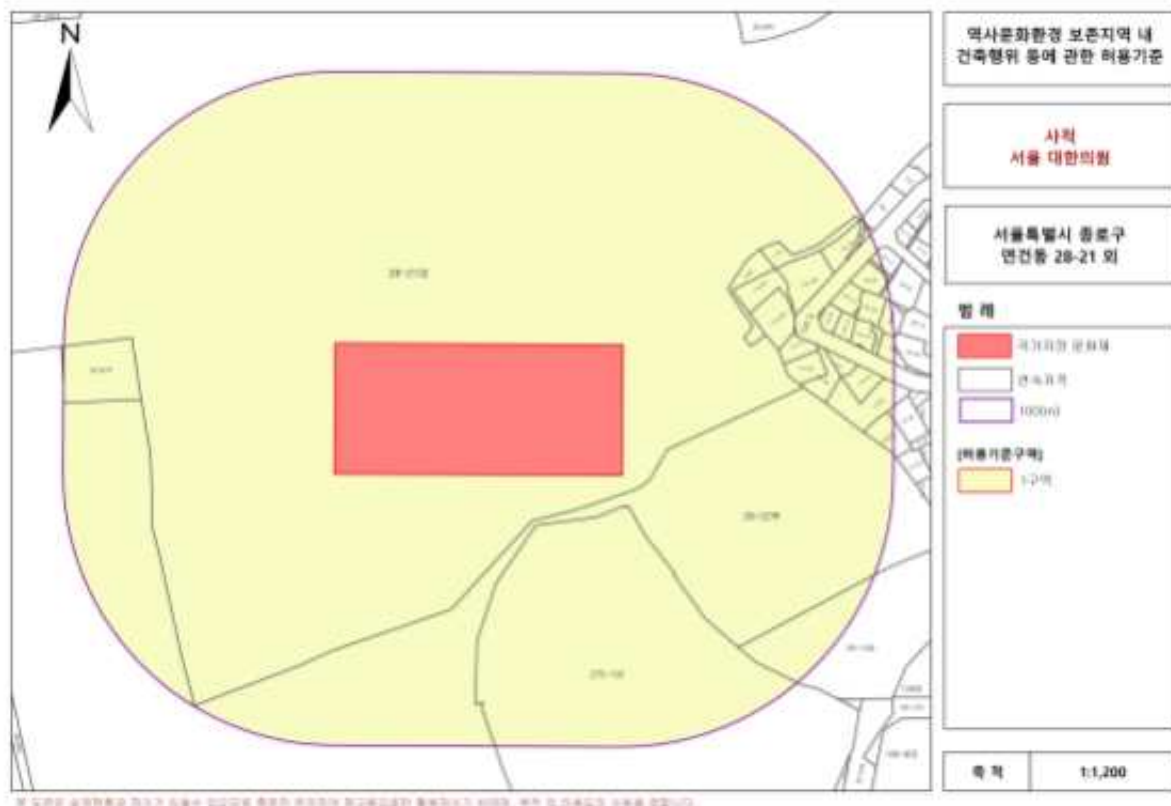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원지형 보존)	
제2구역	개별검토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공동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3) 서울 중앙고등학교 본관, 서울 중앙고등학교 서관, 서울 중앙고등학교 동관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원지형 보존)	
제2구역	2-1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0m 이하
	2-2	최고높이 8m 이하	
제3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3,4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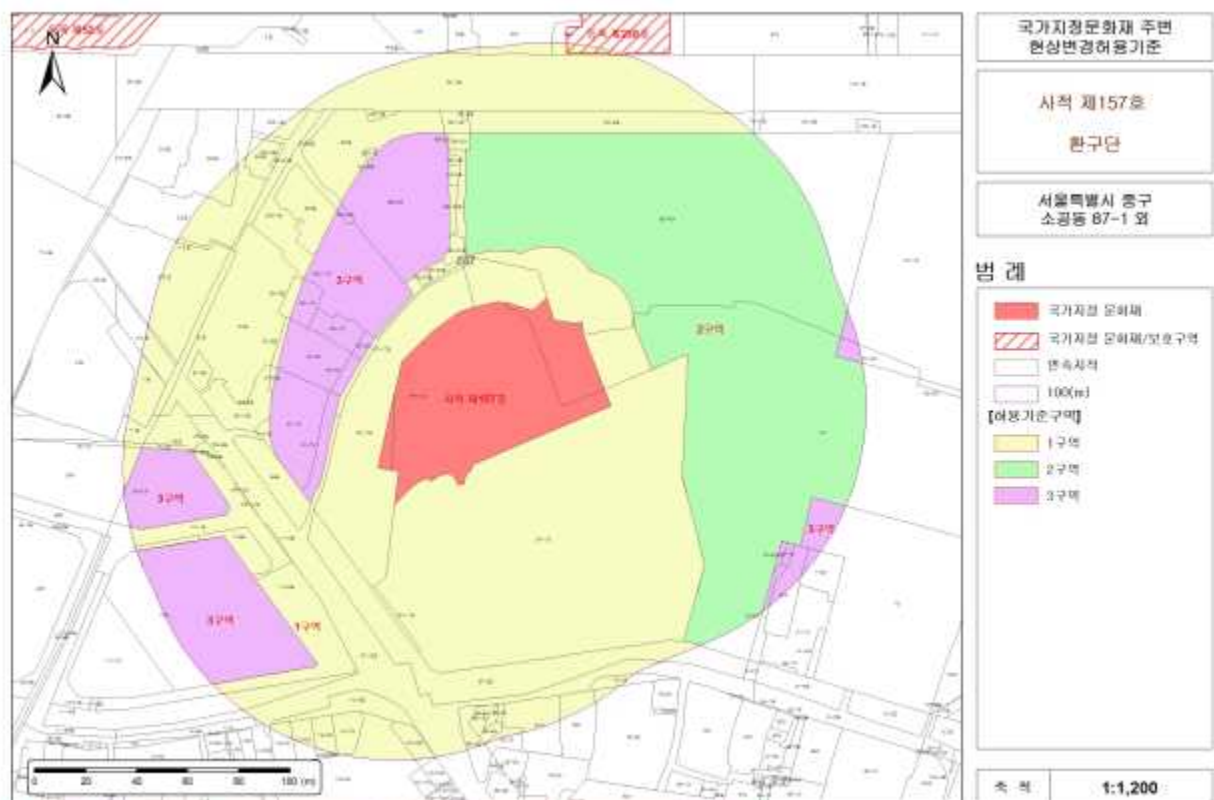
- 조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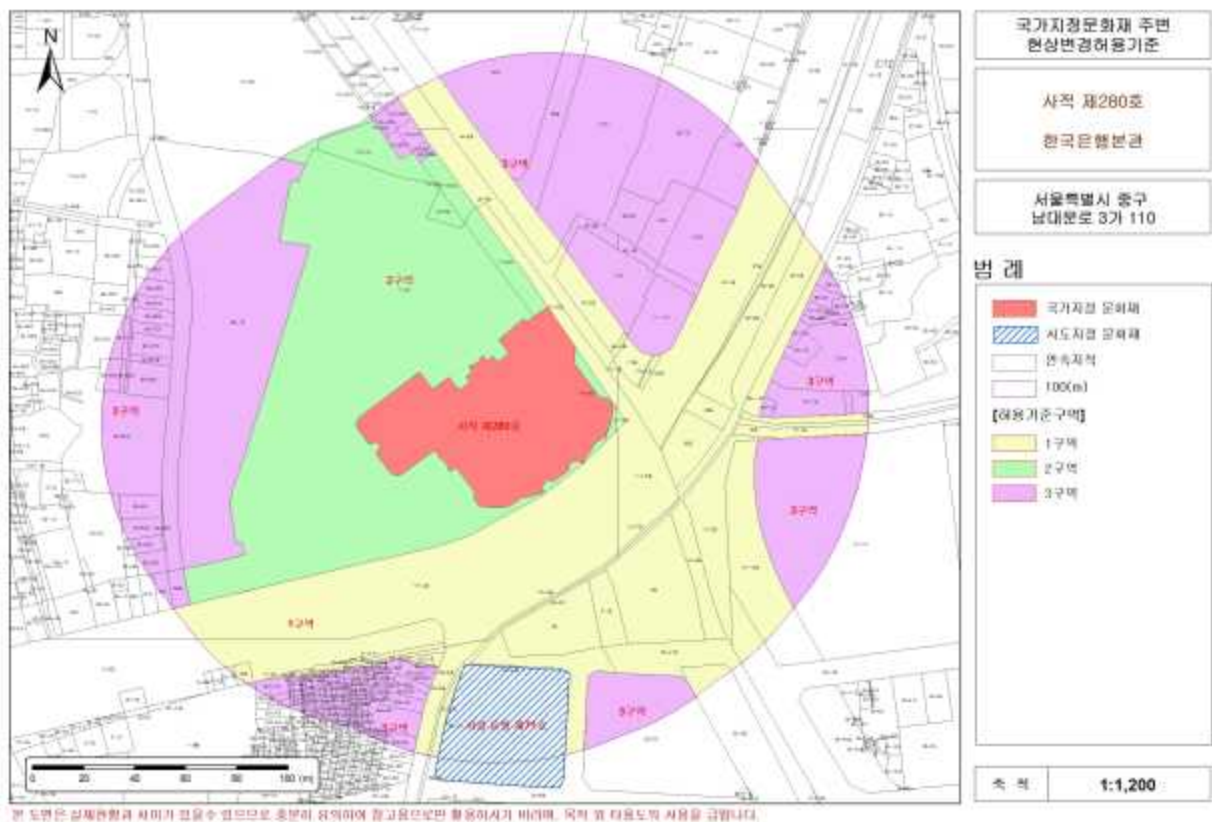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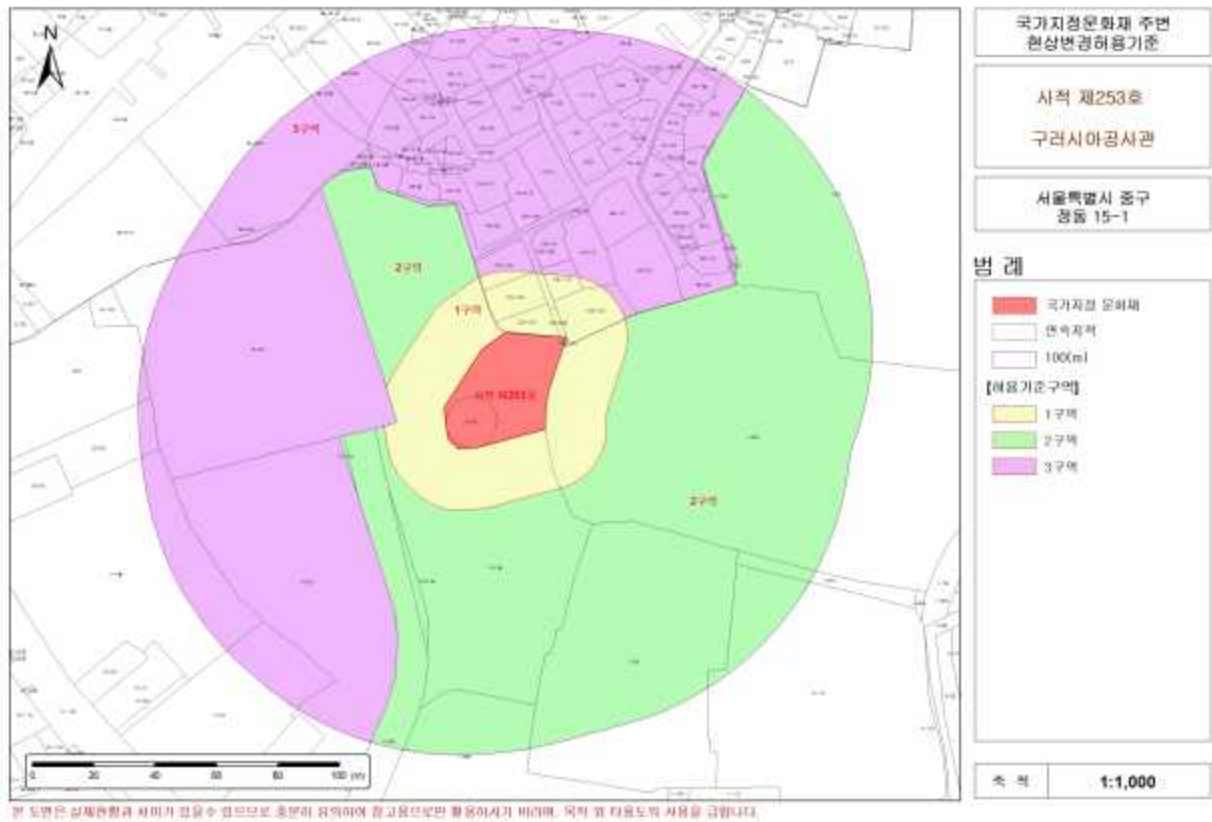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2구역	2-1	최고높이 8m 이하	최고높이 10m 이하
	2-2	최고높이 8m 이하	
제3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3,4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4) 환구단, 서울 구 러시아공사관, 서울 한국은행 본관

○ 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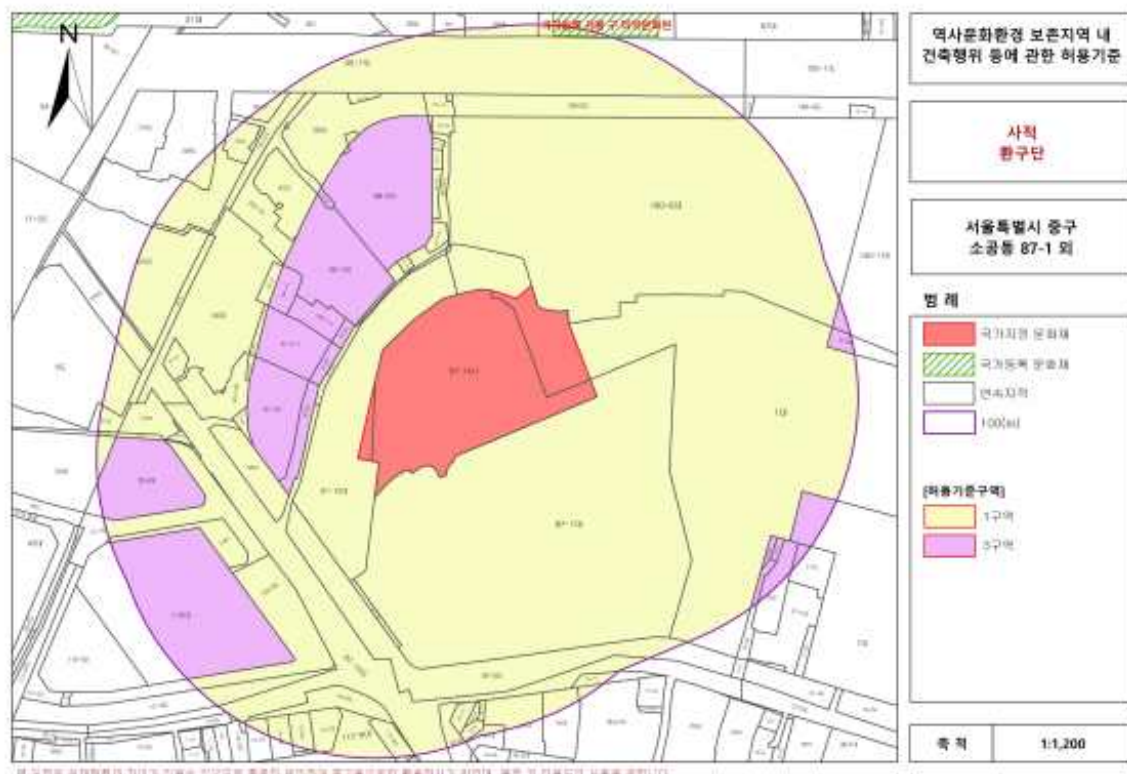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원지형 보존)	
제2구역	개별검토	
제3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 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3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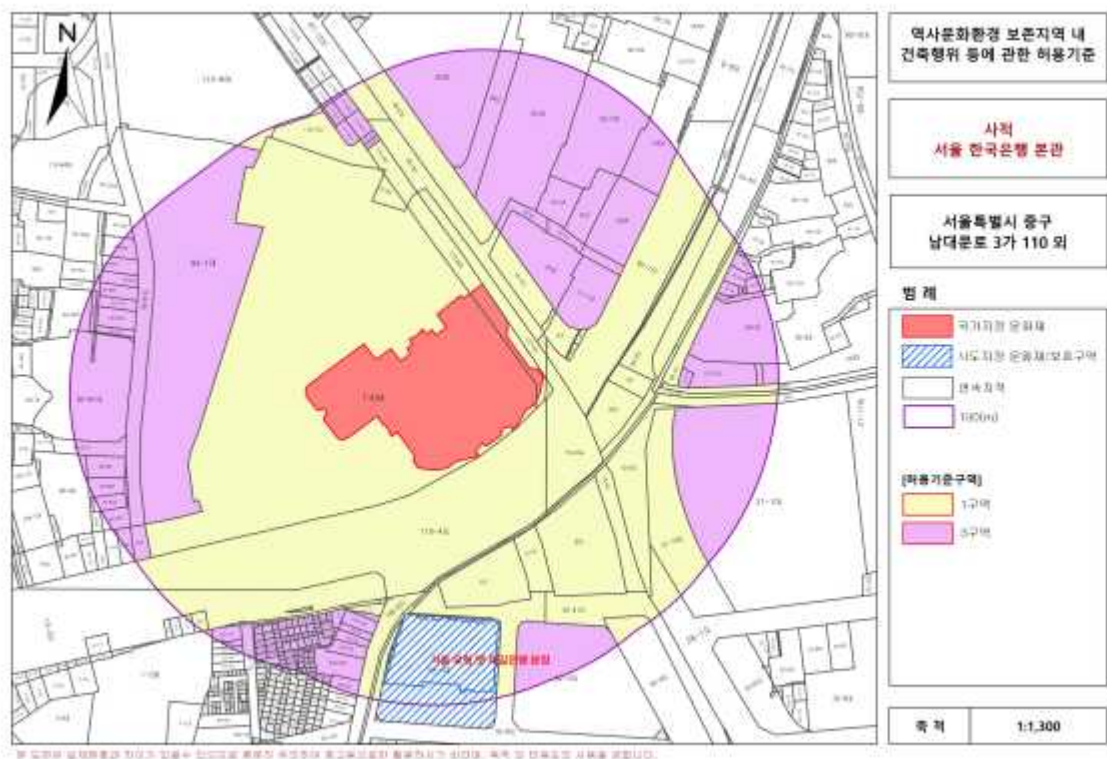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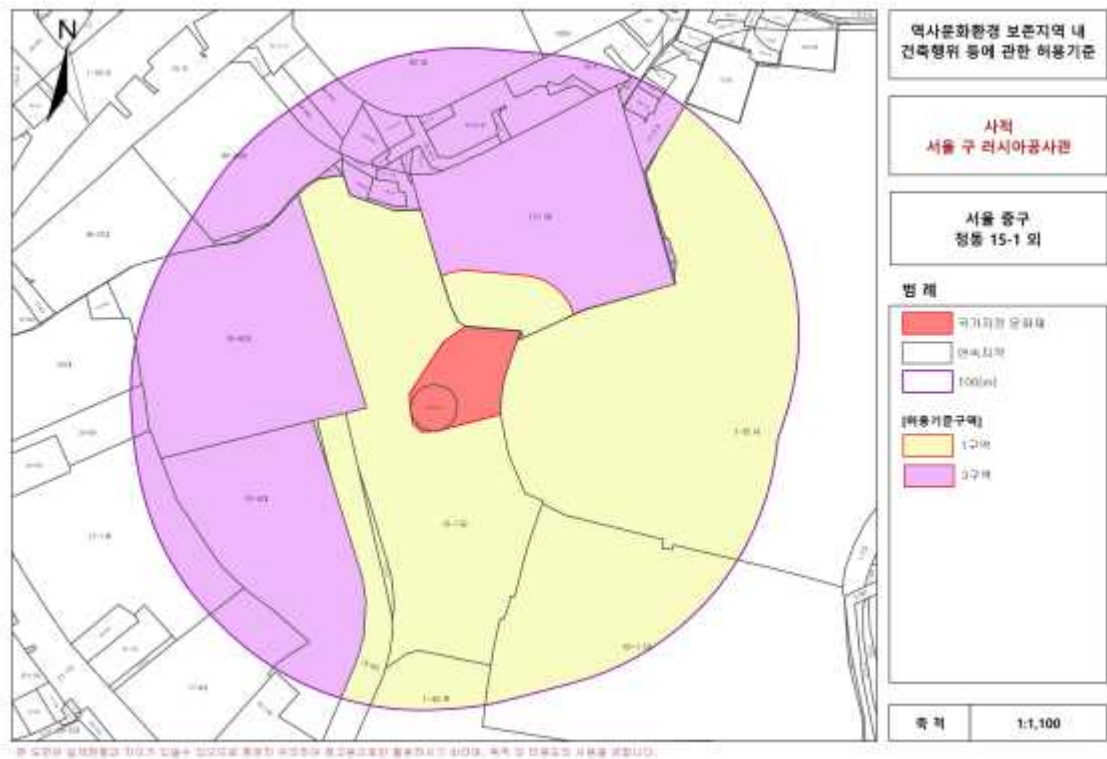




○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3구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 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3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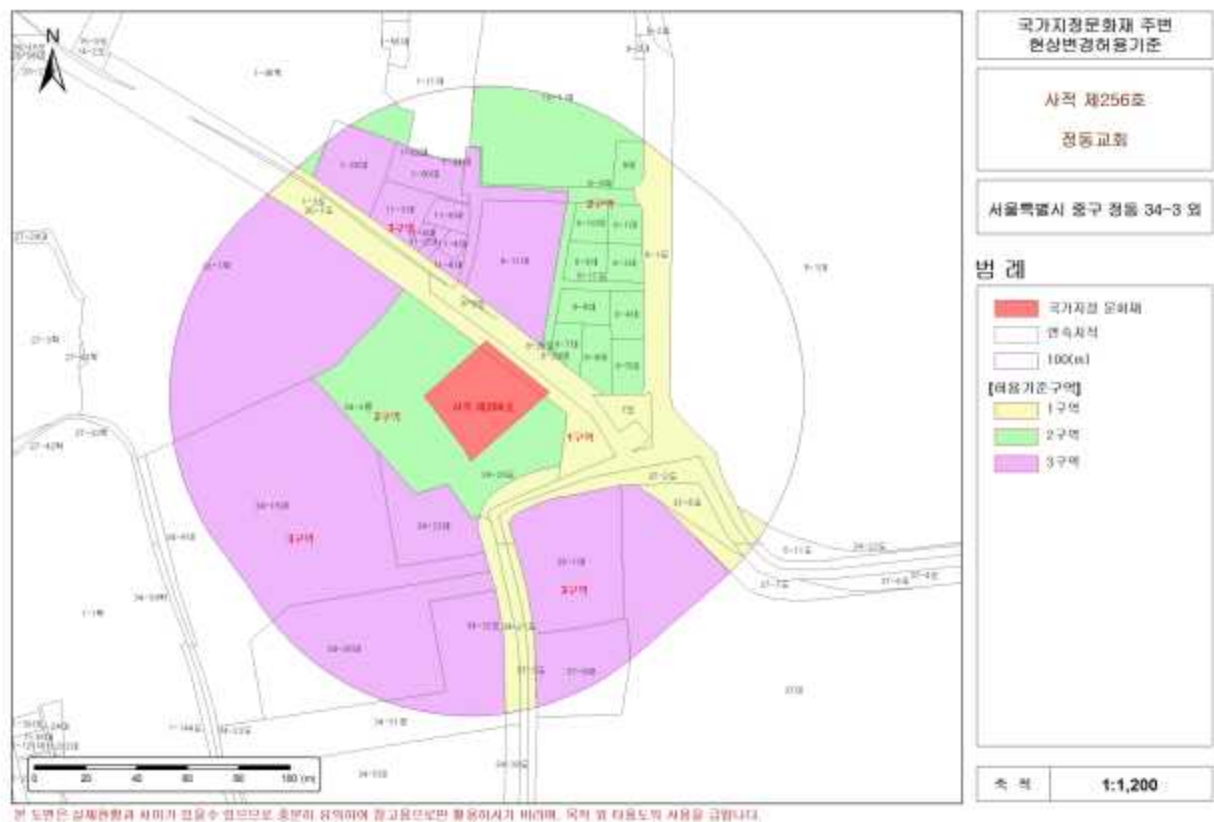




(5) 서울 정동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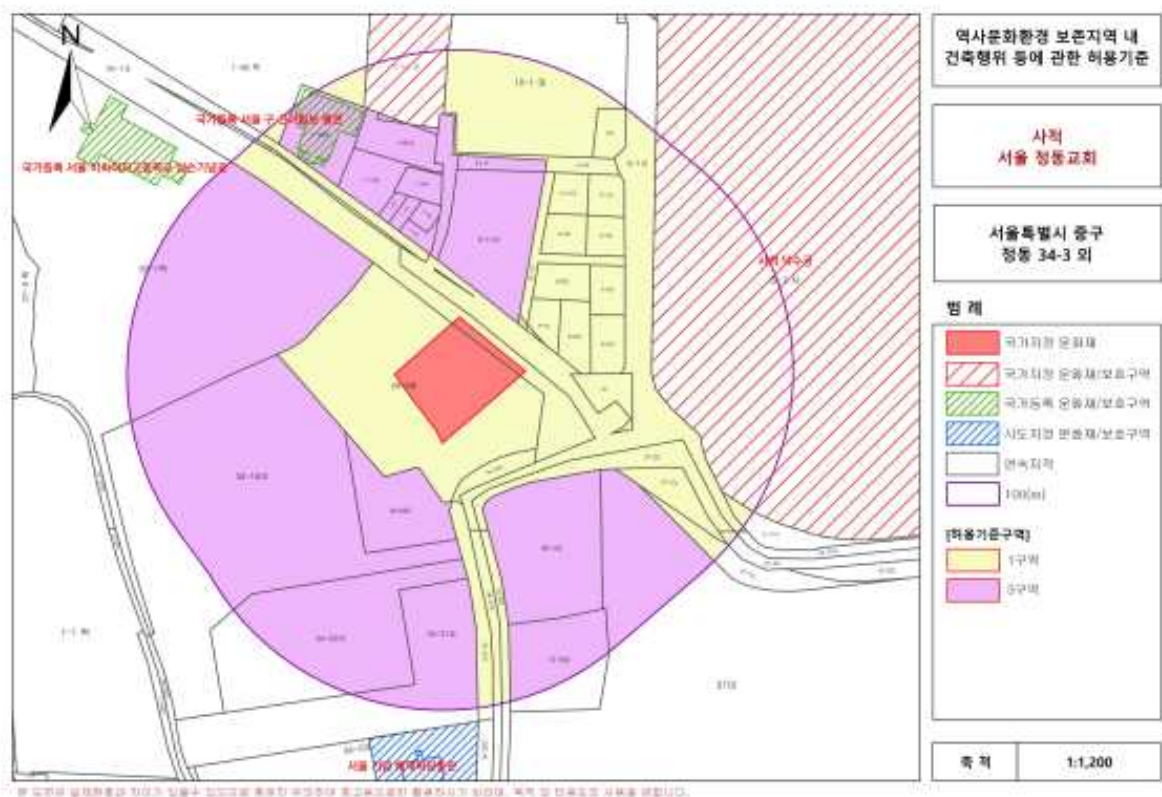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원지형 보존)	
제2구역	개별검토	
제3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7m 이하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 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3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검토	
제2구역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7m 이하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면적이 전체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은 개별검토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3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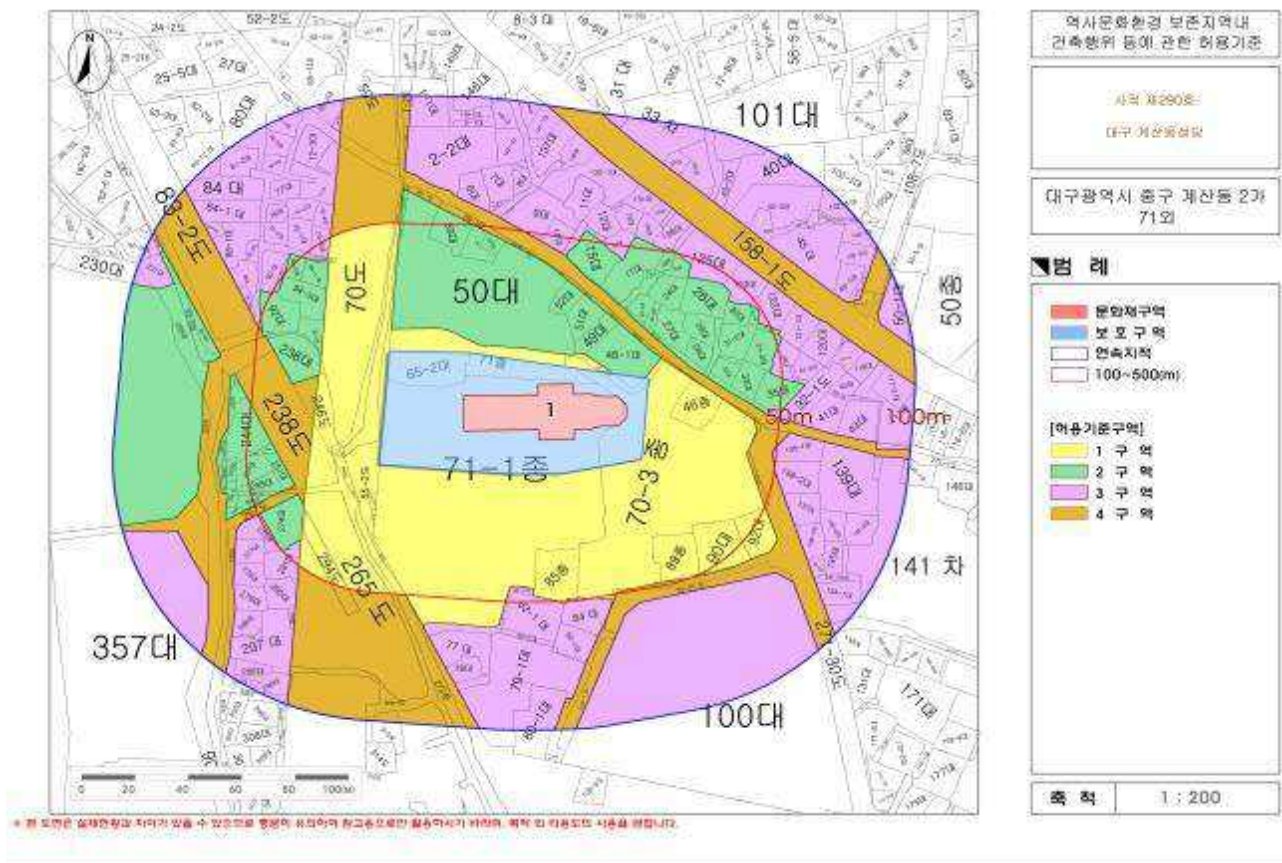


(6) 대구 계산동성당

※ 2023년 제11차 근대분과 위원회 **부결**(공통사항을 적용하지 않는 조항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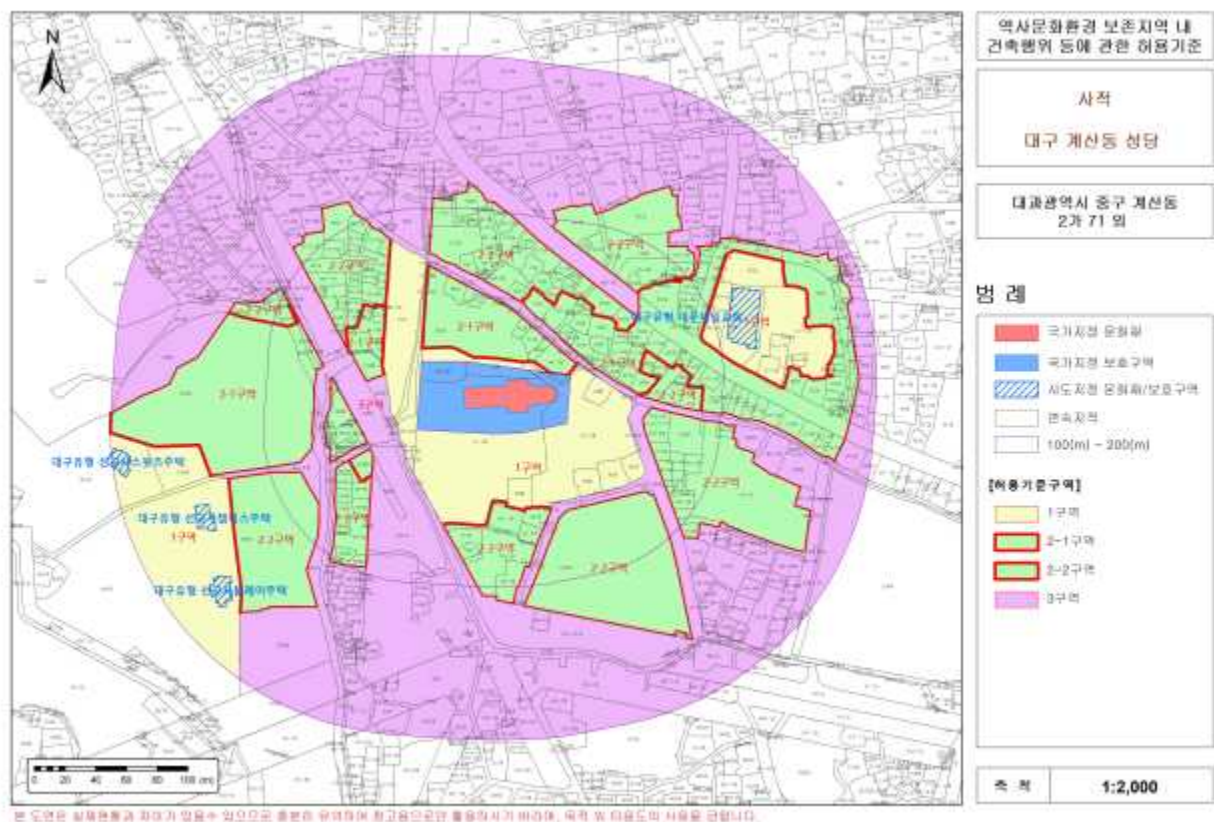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개별 심의	
제2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14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8m 이하
제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26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30m 이하
제4구역	대구광역시(중구) 도시계획조례 등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1구역, 2구역,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심의함 (기존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의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1구역 내)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개별 검토	
제2구역	2-1	최고높이 14m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
	2-2	최고높이 26m 이하	최고높이 30m 이하
제3구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경사지붕은 경사비율이 10:3 이상으로 양쪽 경사이면서 비경사 면적이 전체 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에 한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검토함 ○ 최고높이 32m 이상 건축물은 개별 검토함 (기존 범위 내 재·개축인 경우에는 제외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허용함.(2,3구역) ○ 허용기준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함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 이전의 행정행위는 소급적용하지 않음 ○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구역에 대해서는 기존 행정행위에 대해 소급적용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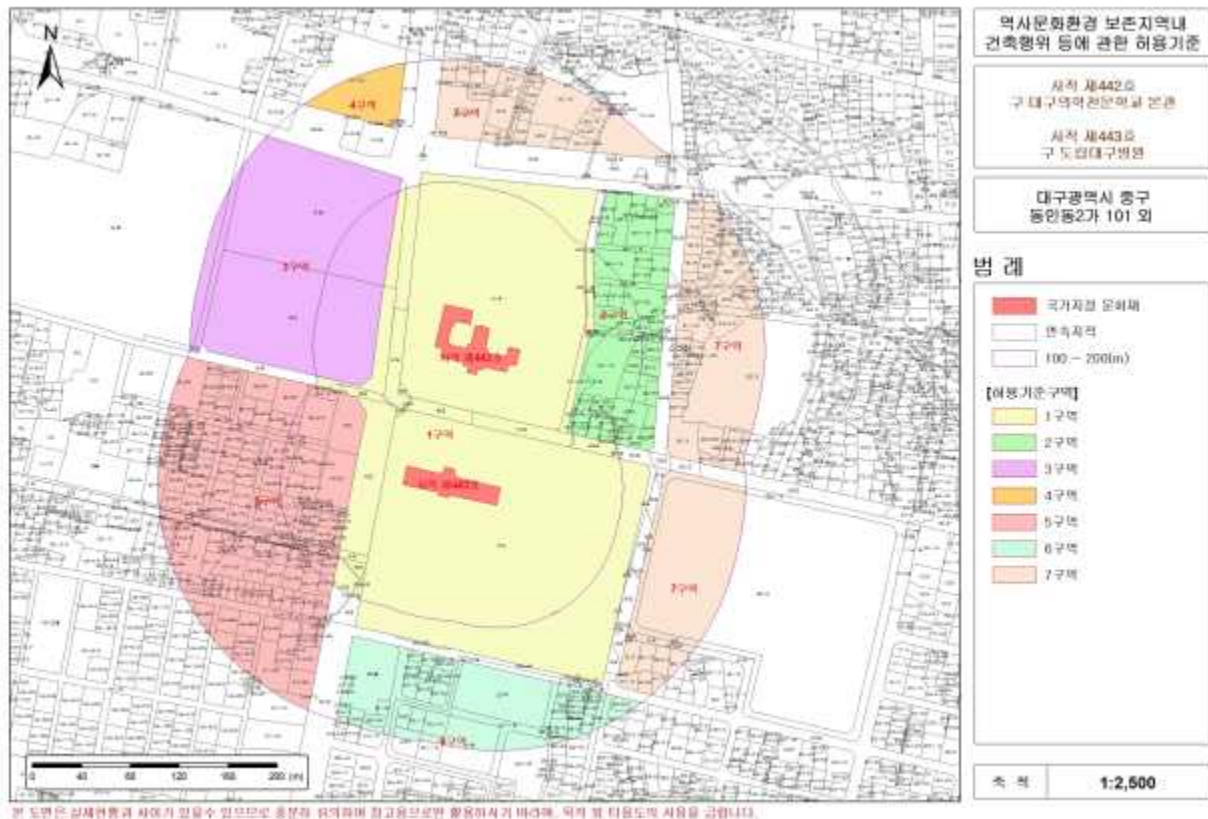


(7)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 구 도립대구병원

※ 2023년 제11차 근대분과 위원회 **조건부 가결**(1, 2구역의 허용용도 조항을 삭제하면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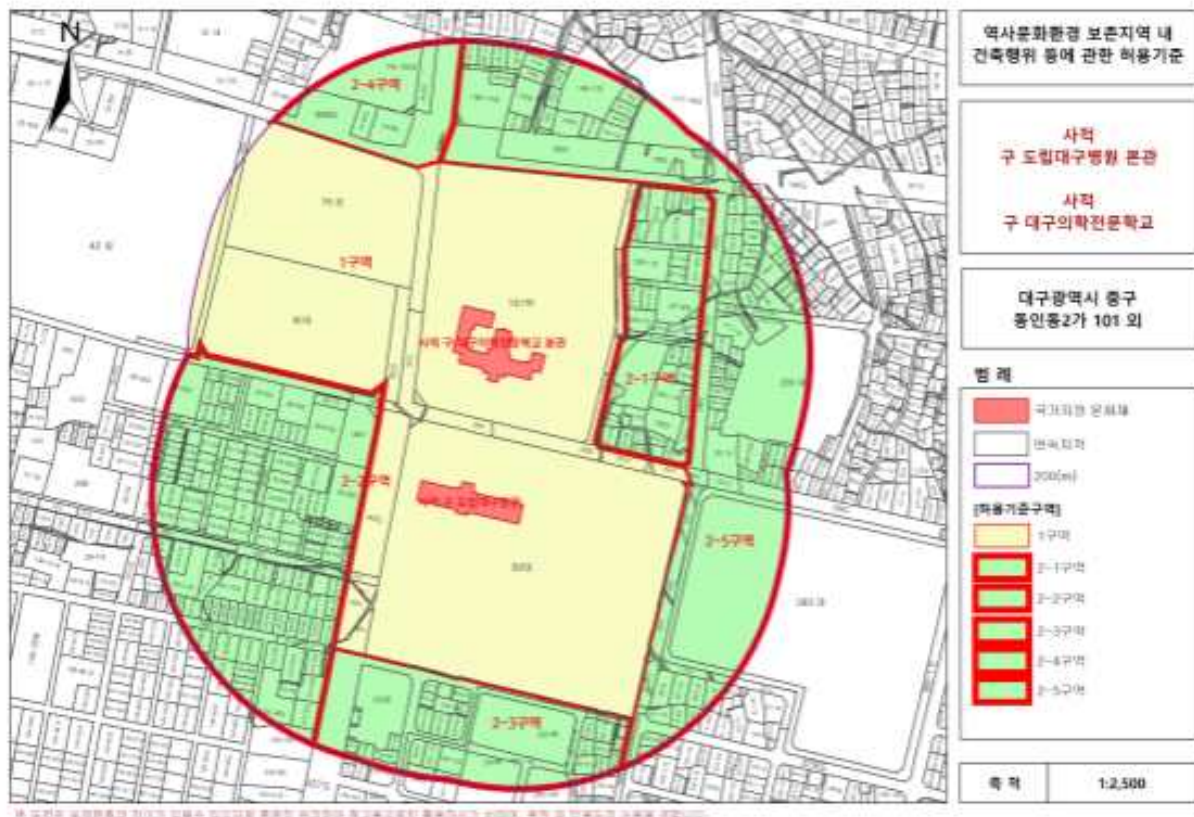
○ 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 건축물 허용용도 : 학교(대학교), 의료시설(종합병원)	
제2구역	○ 개별검토 ○ 건축물 허용용도 : 공공용 시설	
제3구역	○ 최고높이 25m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37m 이하	
제5구역	○ 최고높이 40m 이하	
제6구역	○ 최고높이 50m 이하	
제7구역	○ 최고높이 66m 이하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 조정(안)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제1구역	○ 개별검토	
제2구역	2-1	○ 최고높이 25m 이하
	2-2	○ 최고높이 37m 이하
	2-3	○ 최고높이 40m 이하
	2-4	○ 최고높이 50m 이하
	2-5	○ 최고높이 66m 이하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개축을 허용함. ○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 처분시설), 태양에너지 설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검토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검토함. ○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 사전 협의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9명/ 원안가결 8명, 기권 1명

검 토 사 항

2. 「구 부산측후소」 사적 지정 검토(재검토)

가. 제안사항

부산광역시 중구 소재 「구 부산측후소」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산광역시 중구 소재 「구 부산측후소」(부산광역시 기념물 ‘부산지방기상청’)를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 신청(’22.1.5.)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받고자 하는 사항임
- 본 안전은 2023년 문화재위원회 제9차 근대문화재분과(’23.9.26.)에서 보류된 사항으로 신청인의 보완자료 제출(’24.2.13.)에 따라 이를 재부의함
 - 보류사유: 사적 지정을 위한 가치판단 자료 보완 후 재심의
 - 보완내용: 측후소 주변 공간의 현황 및 가치, 사적 지정 후 활용 계획 등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부산광역시청
- (2) 대상문화재: 구 부산측후소 * 現 부산광역시 기념물 「부산지방기상청」(’01.10.25. 지정)
 - 소재지: 부산광역시 중구 북병산길32번길 5-11(지번: 대청동1가 9-305)
 - 소유자: 기상청
 - 건립시기: 1933년
 - 수량/구조: 1동(지상4층, 연면적 644.87㎡), 철근콘크리트구조
- (3) 검토사항: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 (4) 지정범위
 - 문화재구역: 건물 1동(지상 4층, 건물면적 295.87㎡, 연면적 644.87㎡)
 - 문화재보호구역: 9,145.1㎡, 임야 2필지(중구 대청동1가 9-305, 9-435)

라. 지정조사보고서 종합 의견

- 문화재위원 ○○○(’22.8.8.)
 - 설립 후 현재까지 기상관측을 중단 없이 수행한 대표적 기상관측시설이며, 1933년 신축된 구 부산측후소는 서울 기상관측소와 함께 철근콘크리트 구조,

모더니즘 양식으로 근대 기상관측시설의 형식을 보여주는 유익한 사례임.

- 일부 증축과 개보수가 있었지만 전반적인 건축원형의 보존상태도 양호한 상태임. 근대적 기상관측 시설로서의 역사성, 대표성, 희소성을 바탕으로 사적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문화재위원 ○○○('22.8.8.)

- 1933년 건축된 모더니즘 양식의 청사 건물은 일부 증축 있으나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되고 있으며, 측후소를 둘러싸고 있는 관측을 위한 주변 공간도 비교적 원상태와 기능을 잘 유지하고 있어 청사뿐 아니라 전체 공간으로서의 진정성이 높음.
- 또한 2001년 지방문화재 지정 이후 문화재로서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관리되었음. 따라서 사적으로서의 승급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문화재전문위원 ○○○('22.8.8.)

- 현재 관측시설 중 문화재로 지정된 서울 기상관측소(국가등록문화재)의 여건과 구 부산측후소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음.
- 역사성과 대표성, 희소성을 지니고 있으나 증축에 따른 부분변형, 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는 관사 포함 여부, 표준목 및 식물관측원 복원여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마. 현지조사자 추가 의견(보완자료 검토/○○○, '24.3.18.)

- 1차 심의('23.9.26.)에 따른 보완 자료의 주요 내용은 '(1)관측목의 원형성과 현황, (2)지원시설(관사) 및 측후소의 가치, (3)사적 지정 후 활용계획'임.
- 측후소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1)측후소 (2)관측노장 (3)관측목(관측표준목 등) (4)지원시설(관사) 등이 완성체로 구성되는 것이 사적 지정에 따른 보존가치가 높으며, 관리측면에서의 활용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보완자료의 내용 및 미비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식물관측원의 계절관측표준목으로 추정되는 왕벚나무의 경우 수령 80년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기상관측기록 및 신문기사 등 기록 추가 확보, 제시가 미흡하여 판단하기 어려움.
- 또한 측후소의 경우 1989년 보수공사에 의해 외관 변형이 있음. 사적으로서의 원형성유지에 대하여 방향제시가 미흡함.
-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사적지정 기준에는 부분적으로 충족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사적 지정 가치 미흡

○ 출석 9명/ 부결 6명, 기권 1명, 제척 2명

3.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소재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의 국가등록 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공모사업('22.2.14.~22.8.8.)을 통해 후보 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으로, 시·도문화재위원회('23.6.8.) 및 현지조사('23.8.28.~8.29.)를 거쳐 공간 범위 적정성 및 공간 내 개별 등록신청문화재의 등록가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공모사업 추진경과】

- 사업 공모('22.2.14. ~ 4.15. / 총 5개 광역, 9개 기초 선정)
 - 대전(동구), 경기(파주), 충북(옥천), 전북(김제·전주·정읍), 전남(보성·순천·여수)
- 서면평가('22.5.3.): 4개 지역 선정(경기 파주, 충북 옥천, 전남 순천·여수)
- 현장조사('22.6.13.~6.23.): 신청사업 확인 및 검토
- 종합평가('22.8.2./여수 거문도 1개 지역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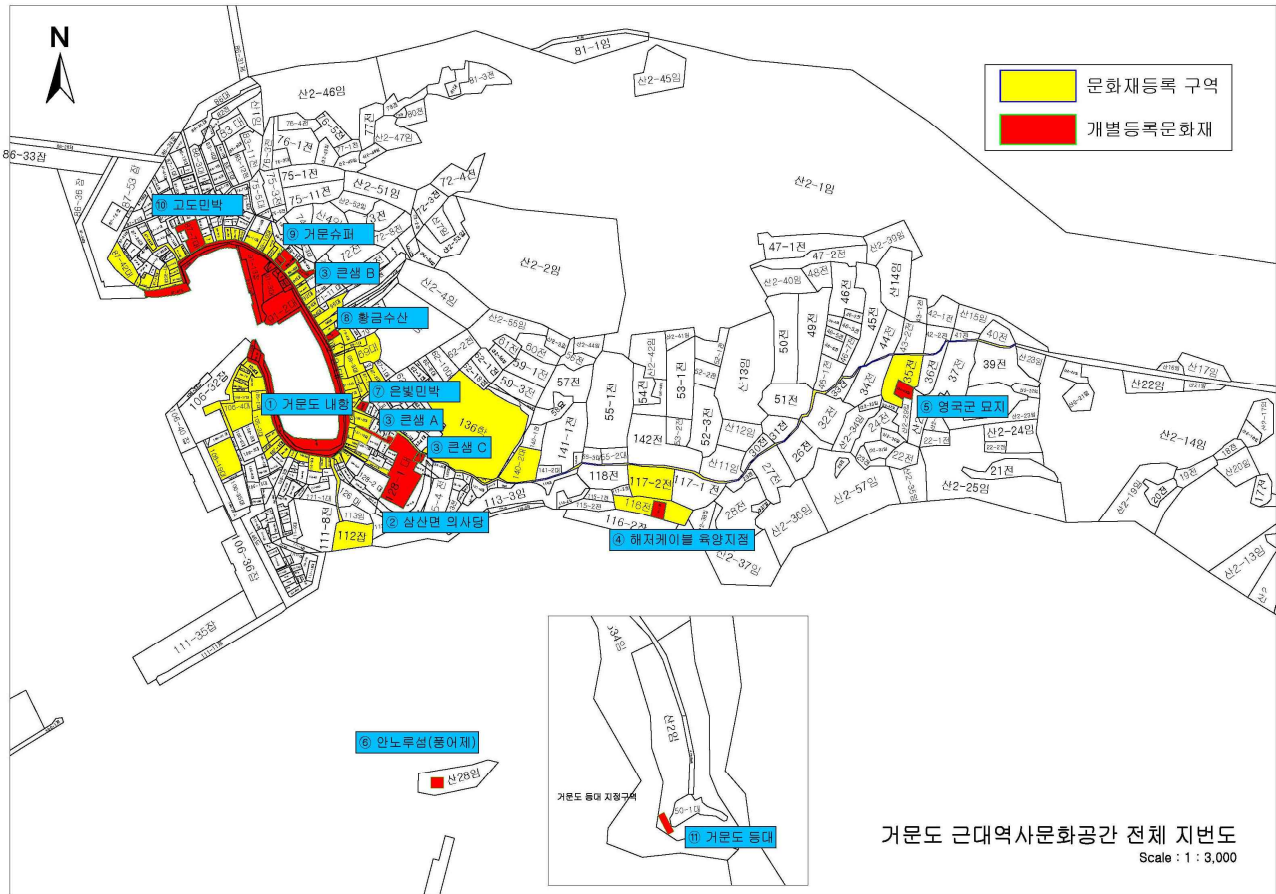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여수시장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 소 재 지 : 전라남도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 35외 118필지(총 119필지)
- 소 유 자 : 여수시 외 다수
- 면 적 : 29,358.6m² / 119필지
- ※ 상세내역 <붙임 2> 참조

○ 등록신청범위 현황도



○ 국가등록문화재 신청 목록 : 총 11개

번호	신청대상	건립 년도	용도	규모·수량	소재지	소유자 (동의여부)
1	여수 거문도 삼산면 의사당	1959	공공시설 (창고, 회의실)	지상2층 1동 87.15㎡	삼산면 거문리 128-1	여수시 (○)
2	여수 거문도 큰샘	1895 이후	생활시설	8.67㎡, 3동 (A)3.36㎡ (B)3.36㎡ (C)1.95㎡	삼산면 거문리 (A)131-6 (B)89-3 (C)123·124	(A)국토부수입관리관 여수시(B)○○○... (C)기재부 (○)
3	여수 거문도 해저케이블 육양지점	1885	통신시설	195㎡, 1기	삼산면 거문리 116-1	기획재정부 (○)
4	여수 거문도 영국군 묘지	1910	묘지	115.5㎡, 3기	삼산면 거문리 산 2-28	여수시 (○)
5	여수 거문도 안노루섬(풍어제)	-	종교시설	30㎡, 1기	삼산면 거문리 산 28	○○○ (○)
6	여수 거문도 은빛민박	1966	주거시설 (상가, 주택)	지상2층 1동 67.1㎡	삼산면 거문리 65	○○○ (○)

번호	신청대상	건립 년도	용도	규모·수량	소재지	소유자 (동의여부)
7	여수 거문도 황금수산물	1955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	지상2층 1동 63.22㎡	삼산면 거문리 98	○○○ (○)
8	여수 거문도 거문슈퍼	일제 강점기	근린생활시설, 주거시설	지상3층 1동 99㎡	삼산면 거문리 89-5	○○○ (○)
9	여수 거문도 고도민박	1925	숙박시설	지상2층 1동 282.46㎡	삼산면 거문리 87-7	○○○ (○)
10	거문도 내항	거문도 사건 이후	호안시설	6,197㎡	삼산면 거문리 87-47 외 17필지	○○○...
11	여수거문도 등대	1905	공공시설 (등대)	13㎡ 1동	삼산면 덕촌리 산2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4) 추진경과

- ('23.6.8.) :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
- ('23.7.3.)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전라남도→ 문화재청)
- ('23.8.28.~8.29.)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 ('23.9.1.) : 보완자료 요청(문화재청 → 여수시, 등록 구역 변천과정 및 고증자료 등)
- ('23.11.7.) : 보완자료 제출(여수시 → 문화재청)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

○ 문화재위원 ○○○('23.8.28.~8.29.)

- 거문도는 19세기 말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요충지로 서구 열강의 아시아 진출에 따른 경쟁관계와 연관되어 있어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특히 19세기 영국군 점령기(1885~1887)에 조성되었던 영국군 막사터(현 거문초등학교 자리)와 해저케이블 등 영국군 관련 유적 및 묘지 등이 현존하고 있음.
- 영국군의 철수 이후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이주하여 어항을 형성하며 근대적 항만시설을 조성하였으며, 당시 어항형태와 어촌 마을이 갖는 공간적 조직 등을(필지분할 및 해안도로) 확인할 수 있으며, 근대가옥 유산이 현존하고 있음.
- 또한 1940년대 태평양전쟁기 일본군 유적과 6.25 한국전쟁기 군사시설의 일부 유적이 남아 있음. 또한 해방 이후 국내 수산기지로 발전하며 조성되었던 항만시설과 수산관련 시설이 있으며 1960, 70년대 경제성장기 도서지역 어촌사회가 갖는 공간적 특성과 시설(지역의회)들이 현존하고 있음.

-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이 갖는 가치와 특성은 3~4유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시대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유산에 대한 조사를 통해 등록대상과 활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등록 신청유산의 경우 주로 유형 1, 4와 건축물에 편중되어 있어 본 유산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재정리가 필요하며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이 갖는 물리적 자산과 비 물리적 자산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유산 유형		주요 특성	신청대상
유형 1.		근대기 역사 및 해양사적 사건	큰샘, 해저케이블, 영국군묘지
유형 2.		거문도의 근대 항만시설이 갖는 특수성	거문도 내항, 거문도 등대, 등명기
유형 3.		태평양 및 한국전쟁기: 태평양 군사시설	-
유형 4.	4-1	근대기 수산업 전진기지(이주어촌 취락마을)	은빛 민박, 황금수산, 거문슈퍼, 고도민박
	4-2	근대기 도서지역의 생활민속	안노루 섬. 삼선면 의사당

- 이를 반영한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의 지적 및 면적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근대기 조성된 거문도 항만시설과 이와 관련된 특성에 대한 추가조사(내항, 방파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등록 신청유산의 경우 주로 유형 1, 4와 건축물에 편중되어 있어 본 유산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재정리가 필요하며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이 갖는 물리적 자산과 비 물리적 자산을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거문도 등대 및 등명기는 본 사업(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과 연계유산으로 별도로 등록하고 이에 따른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임.

○ 문화재위원 ○○○('23.8.28.~8.29.)

- 근현대사에서 거문도 사건(1885년)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이주어촌으로 형성과 발전,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수산업의 발전에 따른 산업시설 흔적이 남아 있는 근대역사 공간임
- 19세기 말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막고자 영국군 불법 점령 후 조성된 시설과 흔적이 남아 당시 동북아의 국제 정세 속에서 군사요충지 사용된 중요 장소임을 알 수 있음. 영국군 점령 시의 막사(현 거문초등학교 자리)는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에 설치했던 해저케이블과 관련된 유적 및 영국군 묘지 등이 남아있고, 현재의 내항도 영국군 점령 당시부터 축항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현재 거문도 내항은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근대적 내항으로 축성되고, 일본인들이 이주하여 어항을 형성하였음. 현재 남아있는 항구의 형태와 도시조직은 일제강점기의 매립과 필지분할에 기반하고 있으며, 내항을 중심

- 으로 해안도로 주변에 근현대 시기 건축된 행정시설 및 근대가옥이 남아있음.
-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은 해방 이후에도 풍부한 수산 자원의 거래와 관련 산업의 발전에 따라 항만시설이나 수산관련 물류시설이 확충되었으며, 이러한 수산산업의 발전으로 형성된 다양한 근현대문화유산 남아있음. 또한 한국전쟁 이후 도서 지역 임에도 당시 건축된 의회 건물 등 공공시설이 남아 있어 거문도의 도시 변화에 흔적이 집적된 역사적인 장소임.
 - 거문도의 근현대문화유산(개별 등록신청대상)에 대한 가치는 문화재 등록을 통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근대역사문화공간에 면(面) 단위 가치를 보다 구체화하고 포괄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문화유산의 형성과 변화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아카이빙과 연구를 통해 그 결과를 종합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시기 및 가치	관련 유적
1	1885년 영국군 불법점령 사건(거문도 사건)은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영국과 러시아가 대립한 역사적 사건이며, 거문도가 사건의 거점지역으로서 당시에 흔적이 남아 있음	· 해저케이블 육양지점 · 영국군 관련 유적(묘지, 주둔지 등)
2	일제강점기 이주어촌을 조성하고 내항을 축항함에 따라 거문도 도시(시가지)형성 및 근대수산업에 발전에 기반이 마련됨	· 거문도 내항 · 근대가옥
3	해방 이후 내항을 중심으로 수산시장과 수산업의 발전 등 거문도 발전에 전성기에 조성된 시설과 경관 유지	· 삼산면 의사당 · 거문도 내항(개보수 및 변천과정과 흔적) · 산업시설(수산창고 등) · 근대가옥

○ 문화재전문위원 ○○○('23.8.28.~8.29.)

- 거문도는 19세기 말 거문도 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곳으로, 아시아 지역 군사요충지로 서구 열강의 아시아 진출 및 경쟁과 연관되어 있어 세계적으로 중요한 장소임. 영국군 점령 시의 막사(현 거문초등학교 자리)는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에 설치했던 해저케이블과 관련된 유적 및 영국군 묘지 등이 남아있고, 현재의 내항도 영국군 점령 당시부터 축항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19세기 말 세계사의 현장을 증언하고 있음.
- 또한 일제강점기에 본격적으로 근대적 내항이 축성되고, 일본인들이 이주하여 어항을 형성하였음. 현재 남아있는 항구의 형태와 도시조직은 일제강점기의 매립과 필지분할에 기반하고 있으며, 해안도로 주변에 근대가옥이 남아있음.
- 해방 이후 거문도는 국내적으로 중요한 어항이었으며, 풍부한 수산자원으

로 인해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음. 항만시설이나 수산물 관련 물류시설이 확충되었으며, 이러한 번영은 대한민국의 6, 70년대 경제개발기와 일치함. 또한 50년대 지역의 회 건물들이 남아있어 해방 후 지방자치의 기념할 수 있는 귀중한 장소임.

- 거문도와 관련된 역사자원(개별 등록신청대상)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은 세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고, 앞으로도 각 시대의 가치에 맞추어 보존, 활용할 필요가 있음.

	시기 및 가치	관련 유적
1	19세기 영국군 점령(거문도 사건), 서구가 진출한 아시아 지역 군사적 거점이라는 세계사적 위치	해저케이블 육양지점, 영국군 관련 유적
2	일제강점기 축항으로 인한 근대 항구(타원형 내항) 및 시가지 조성	거문도 내항, 근대가옥
3	해방 이후 지역 발전과 어항으로서의 전성기	삼산면 의사당, 부두, 수산창고, 근대가옥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등록구역은 공간 내 개별등록문화재 및 활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
- 국가등록문화재 명칭은 다음과 같이 정함
 - 면단위 국가등록문화재: 여수 거문도 근대역사문화공간
 - 공간 내 개별 국가등록문화재: 여수 거문도 구 삼산면 의사당, 여수 거문도 해저통신시설

○ 출석 9명/ 조건부가결 7명, 제척 2명

4. 『곡성성당』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곡성군 소재 「곡성성당」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3.10.11.)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24.1.26.)를 실시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곡성군청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곡성성당
 - 소 재 지 :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읍내11길 20
 - 소 유 자 :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 수 량 : 1동
 - 건립시기 : 1958년
 - 구조 및 규모 : 쉼셋구조, 조적조 / 1동, 면적 283.6㎡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3.10.11.)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전라남도청 → 문화재청)
 - ('24.1.26.) :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실시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

- 문화재위원 ○○○('24.1.26.)
 - 전후 시대 상황 속에서 건축을 위해 군사용 간이시설로 사용되었던 쉼셋 구조물을 사용하여 건축했다는 점에서 시대적 의미가 있으며 천주교 도입과 전파 과정에서 박해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전쟁 전후 '쉼셋'이라는 건축구조나 재료의 사용에 있어서 건축적 의미와 희소성이 높지 않고, 교회건축이 갖는 양식적·기술적 특징과 재료의

사용 등에 있어서도 기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성당과 비교했을 때 곡성 성당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높다고 보기 어려움.

○ 문화재전문위원 ○○○('24.1.26.)

- 정해박해가 갖는 역사적 배경과 한국전쟁 이후의 혼란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낸 건축적 경험 등을 고려할 때 교회사적 측면에서 의미는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성당 건축의 중요 조형적 요소인 첨탑을 포함해 입면의 파사드가 여러 차례 변화되는 과정을 거쳤고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퀸셋구조를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은 다소 미흡함.

○ 문화재전문위원 ○○○('24.1.26.)

- 국내에서 보기 드문 퀸셋구조의 성당으로 추정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이미 내외부에 상당한 변형이 이뤄져 있으며 이를 상세히 기록한 현장사진·실측조사 자료가 부족하여 충분한 등록가치를 확인하기 어려움.

마. 의결사항

○ 부결

- 등록 가치 미흡

○ 출석 9명/ 조건부가결 2명, 부결 7명

5. 「민영환 명함(충정공 유서)」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민영환 명함(충정공 유서)」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민영환 명함(충정공 유서)」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2.4.5.)에 따라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23.2.16.)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고려대학교박물관장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cm)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민영환 명함 (충정공 유서)	1건 2점	명함 가로 6 세로 9.2 봉투 가로 8 세로 10.5	1905년	고려대학교 박물관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4) 추진경과
 - ('22.10.31.)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신청(서울시→문화재청)
 - ('23.2.16.)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

- 문화재위원 ○○○('23.2.16.)
 - 을사늑약에 반대하여 자결한 민영환은 1962년 건국훈장이 추서된 바 있으며 유서는 유족이 소장한 전래가 명확하고 내용에 있어서도 역사 자료로서 등록 가치가 있음
 - 신청 당시 명칭인 '민영환 명함' 보다는 자료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민충정공 유서', 혹은 '충정공 민영환 유서'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문화재전문위원 ○○○('23.2.16.)

- 민영환 명함에는 을사늑약에 반대하여 자결 순국하면서 '동포'들에게 남긴 유서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민영환 명함'이라는 것은 자료의 명칭으로 적합지 않고, '충정공 민영환 유서(명함)'라고 해야만 함. 그 이유는 민영환이 순국 당시 유서를 자신의 명함에 다 작성했기 때문임

○ ○○○○○○ ○○○○○○○○○ ○○ ○○○('23.2.16.)

- 민영환 명함은 명함 자체가 아닌 명함에 담고 있는 내용이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대표성·희소성도 충분함
- 사료적 및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유물로, 국가 등록문화유산 지정을 통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음
- 추후에도 지속적인 학술 연구 및 전시·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 필요함
- 문화유산 명칭으로는 '충정공 민영환 유서(명함)'을 제안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등록 명칭은 '민영환 유서(명함)'으로 함
- 출석 8명/ 조건부가결 7명, 보류 1명

6. 「민영익 명함」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연세대학교 동은의학박물관 소장 「민영익 명함」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민영익 명함」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2.5.16.)에 따라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23.2.16.)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연세대학교 동은의학박물관장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cm)	제작연대	소유자	소재지
민영익 명함	1점	가로 5.5 세로 8.8	1883년	연세대학교 동은의학박물관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4) 추진경과
 - ('22.10.31.)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신청(서울시→문화재청)
 - ('23.2.16.)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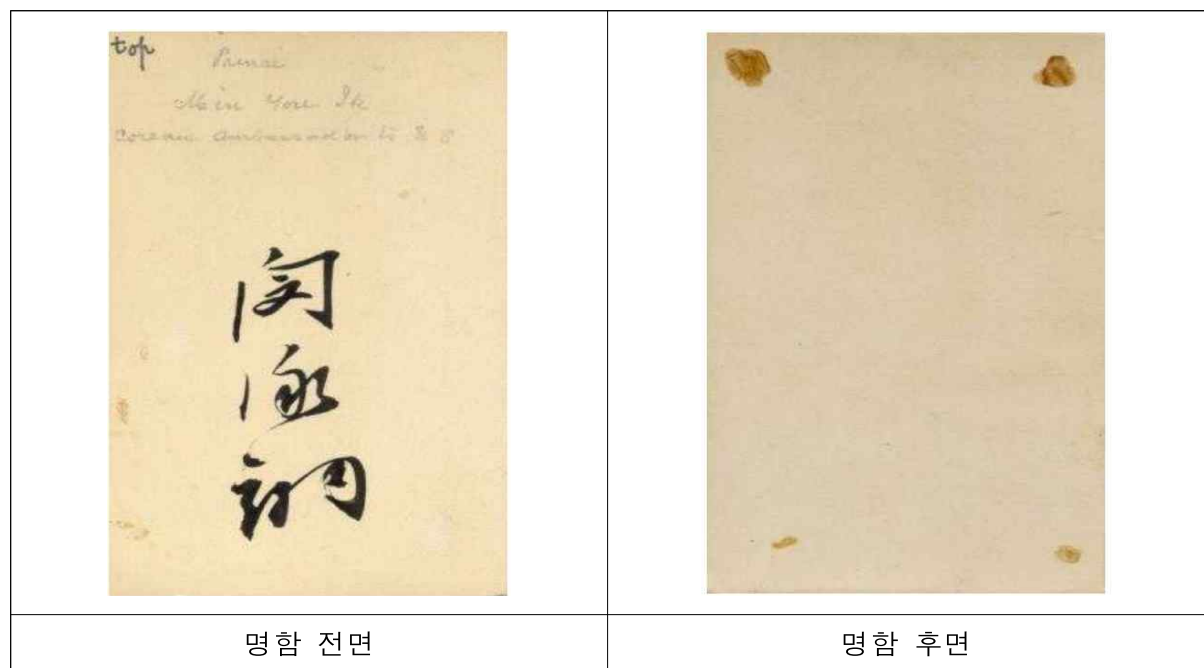
라.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

- 문화재위원 ○○○('23.2.16.)
 - 서화가로 이름난 민영익의 필체로 추정되나, 해당 명함의 사용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경매를 통해 입수하여 전래 경위도 확인하기 어려움. 보빙사절단 파견 당시의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정황이 확인된 이후 자료 가치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함
- 문화재전문위원 ○○○('23.2.16.)
 - 민영익 명함은 한국 최초 미국 외교사절 보빙사절 당시 사용한 것이 확실하면 보빙사 자료로서 매우 가치가 있음. 그러나 이 명함이 경매(코베이 옥션)로

구입되어 자료의 소종래(所從來)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음. 향후 이 명함이 민영익의 보병사절 당시 사용된 것이 입증될 수 있으면, 등록문화유산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됨

○ ○ ○ ○ ○ ○ ○ ○ ○ ○ ○ ○ ○ ○ ○ ○ ○ ('23.2.16.)

- 민영익 명함은 작성 이후 100여 년 이상 출처와 전승 과정이 불분명한 자료로 한국 근대 최초의 명함 유물이라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음
- 따라서 사료적 및 문화재적 가치를 높게 보기 어렵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통해 보존할 만한 가치 여부는 숙고할 필요가 있음



마. 의결사항

○ 부결

- 등록 가치 미흡

○ 출석 8명/ 부결 8명

7. 국가등록문화재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 보수정비 설계(안) 검토

가. 제안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국가등록문화재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의 보수정비 설계(안)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2023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가등록문화재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 보수정비와 관련하여 배면 증축창고 부분을 철거하고자 하는 설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 (2) 대상문화재명: 국가등록문화재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20.6.24. 등록)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757 (토평동)
 - 주요 이력 및 현황
 - 1940년대 건립, 1980년대 보수
 - 2020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300m²)
 - 2021년 정기조사(C등급)
 - 2022년 종합정비계획(국고보조) 수립: 증축부 철거의견 포함(마 참고)
 - 2023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보수정비 설계, 국비 6천만 원)
- (3) 검토사항 : 배면 증축창고 부분 철거(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라. 참고사항

- 종합정비계획 자문의견(2022년): 문화재위원 ○○○
 - 후면 화장실 증축구조물 및 인접 창고는 경관 복원 차원에서 철거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8명/ 원안가결 8명

보 고 사 항

8. 2024년 근대사적 및 국가등록문화재 국고보조사업 추진

가. 보고사항

2024년 근대사적 및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내용

- 2024년 근대사적 및 국가등록문화재의 국고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적정성을 보고 하는 사항임

※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및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대상 선정 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예산평가회의를 거쳐 사업 내용과 예산을 확정함

- (1) 신 청 인 : 문화재청장
- (2) 사업기간 : 2024년 1월 ~ 사업종료 시까지
- (3) 사업대상
 - 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 구분		수량(건)	금액(천원)		
			계	국비	지방비
근대사적		22	2,552,030	1,786,421	765,609
국가 등록	시설물	174	12,828,306	6,414,153	6,414,153
	동 산	15	963,710	481,855	481,855
	근대역사문화공간	12	3,560,000	1,780,000	1,780,000
	소 계	201	17,352,016	8,676,008	8,676,008
합 계		223	19,904,046	10,462,429	9,441,617

-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문화재 구분		수량(건)	금액(천원)		
			계	국비	지방비
근대역사문화공간 (국가등록문화재)		9	4,414,000	2,207,000	2,207,000

- 문화재 재난안전(전기, 소방, 방범, 방재 IoT) 구축

문화재 구분	수량(건)	금액(천원)		
		계	국비	지방비
근대사적	6	204,000	138,400	65,600
국가등록	18	1,061,300	530,650	530,650
합 계	24	1,265,300	669,050	596,250

(4) 사업추진방법

- 문화재청 : 국고보조금 교부, 사업지침 시달, 설계 검토·승인, 기술지도 등
 - 주요사업 : 문화재청(수리기술과, 근대문화재과) 설계검토·승인
 - 단순 보수 등 기타 사업 : 지자체 설계 검토
- 지자체 : 설계도서 작성, 지방검토사업 설계 검토·승인, 사업시행, 사업 감독 등
 - ※ 중요 사안은 단위 사업별로 문화재위원회 별도 검토 후 사업 시행

(5) 행정사항

- 2024년도 근대사적 및 국가등록문화재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은 문화재보호법 제35조 및 제56조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같음하고자 함.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8명/ 원안접수 8명

9.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국가등록문화재 「전차 381호」의 보존처리 등 현상변경 허가 신청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국가등록 문화재 전차 381호	서울시 종로구	서울역사 박물관장	<보존처리> (1) 허가 받는 자 : 서울역사박물관 (2) 허가내용 ○ 위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 내용: 차체 외부 동·서·남측 변색 등에 따른 재도장 ○ 수량: 1량 (3) 허가기간 : 2024. 2. 29. ~ 2024. 3. 31. (4) 허가조건 ○ 보존처리계획서에 따라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행	조건부 허가	'24.2.28
국가등록 문화재 전차 363호	서울시 종로구	국립 어린이 과학관장	<보존처리> (1) 허가 받는 자 : 국립어린이과학관장 (2) 허가내용 ○ 위치: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3 ○ 내용: 차체 내·외부의 변색 및 크랙 등 경미한 손상에 따른 재도장 ○ 수량: 1량 (3) 허가기간 : 2024. 3. 5. ~ 2024. 4. 30. (4) 허가조건 ○ 제출된 보존처리계획서에 현지조사의견을 반영하여 수행 (5) 현지조사 주요의견 <문화재수리기술자 ○○○('24.2.29.) > ○ 클리닝 및 도장 제거 - 도장 제거 후 손상 부위에 대한 복원방안 수립	조건부 허가	'24.3.4.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 복원시 내부식성이 향상된 강판(용융아연도금강판)과 스틸 퍼티 사용 ○ 재도장 - 색상에 대한 기준(조색값)을 제시하고 정확한 도색 공정을 위한 도면 작성 - 재도장에 사용되는 재료인 프라이머, 페인트, 퍼티 등의 구체적인 제시가 필요하며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8명/ 원안접수 8명